

〈표 19〉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가용재원의 산정내역

구 분	항 목	검 토 의 건
세입추계(Ⅰ)	·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지방양여금, 재정보전금, 국고보조금, 시도비보조금, 조정교부금, 지방채	· 경상지출의 범위가 모호함 · 가용재원 범위가 너무 포괄적임
경상지출(Ⅱ)	경상비 및 의무적 경비 채무상환, 기타제지출금	
투자가용재원 (Ⅰ-Ⅱ)	· 의존재원사업 · 자체가용재원	

라 판단된다.

5.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의 분석사례

가. 기존 가용재원 산출방법

기존의 가용재원 산출을 보면 첫째, 중기

지방재정계획상의 가용재원 산출을 들 수 있다. 이는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하여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규모를 분석하고 있다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는 재정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, 이에 기초하여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 대

〈표 20〉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의 가용재원의 산정내역

구 분	항 목	검 토 의 건
세입합계 (Ⅰ)	· 자체재원: 지방세, 세외수입, 재정보조금, 교부세 · 의존재원: 국비보조금, 시도비보조금, 양여금, 지방채	· 경상지출과 투자지출이 혼재하여 필수적 지출 수요가 모호함 · 신규투자가용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함
세출합계 (Ⅱ)	· 경상비: 인건비, 경상적 경비 · 의존재원사업: 의존재원, 지방비부담금 · 채무상환: 지방채상환, 채무부담행위 · 예비비등: 예비비, 기타	
자체사업 가용재원	· 자체사업재원(3) -소규모사업*) -계속사업 -투자심사제외사업 -시군구지원사업 · 신규투자가용재원(Ⅰ-Ⅱ-Ⅲ)	

주 : *) 소규모사업은 시군구 10억미만 사업, 시도 20억원 미만 사업.